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8. 18 선고 2021가합453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

담당변호사 고선철

변 론 종 결 2022. 7. 7.

판 결 선 고 2022. 8. 18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5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10. 25.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당사자의 지위 등

1) 서울 서대문구 C 및 D지구(이하 'C지구' 및 'D지구'라 한다)에 위치하는 토지들의 소유자들은 1993년경부터 아파트 재건축사업(이하 '이 사건 사업'이라 한다)을 시행하고자 하였고, 원고는 1994. 10.경부터 2001. 3.경까지 D지구 재건축조합(이하 '이 사건 조합'이라 한다)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다.

2) 피고는 C지구에 인접한 E 대지 및 그 지상 2층 주택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의 소유자이다.

나.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 등

1) 피고는 1998. 12. 초경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사로 인하여 심한 소음과 이 사건 부동산의 지반이 붕괴되고 벽면이 갈라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였다. 이에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의 관련자들과 피고는 1998. 12. 19. '피고는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, 이 사건 사업으로 설립될 F호(이하 '이 사건 아파트'라 한다) 및 G호를 분양받는다'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약정'이라 한다).

2)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(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가단26562호), 위 법원은 2001. 11. 30. 피고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, 위 판결은 2002. 1. 4. 확정되었다(이하 '이 사건 선행판결'이라 한다). 이에 따라 피고는 2003. 6. 5.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'1998. 12. 19.자 매매'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3) 피고는 2016. 10. 28. H과 I에게 각 이 사건 아파트의 1/2 지분에 관하여 '2016. 7. 25.자 매매'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,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상 거래가액은

510,000,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.

다. 선행 관련사건의 경과 등

1) 원고는 2018. 3. 14. 피고를 상대로 ‘피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준조합원 분양대금 177,865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, 원고가 위 재건축조합에게 212,814,478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에 해당하는 위 분양대금 177,865,000원 및 이에 대한 2010. 6. 22.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’는 소를 제기하였다(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25508호). 위 법원은 2019. 2. 15. 피고가 위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분양대금채무를 부담한다거나,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.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9. 11. 2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(위 법원 2019나32239호), 위 판결은 2019. 12. 13. 확정되었다.

2) 원고는 2020. 6. 11. 피고와 심현임을 상대로 서울 강북구 J대 222㎡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(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합395호), 위 법원은 2021. 1. 20. 원고의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, 위 판결은 2021. 2. 19. 확정되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1호증,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하는데,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등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.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내부 분쟁으로 혼란한 틈을 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되었다. 그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전 조합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원고가 분양받은 K아파트 L호의

매매대금 전액을 이 사건 조합에게 지급하였고, 이로써 피고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분양대금의 원리금 등을 대위변제 하였다.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.

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510,000,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5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금을 수령한 다음날인 2016. 10. 29.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앞서 든 증거, 위 기초사실,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선행판결은 무변론판결로 확정되었고, 이후 이 사건 조합은 2010. 8.경 원고로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75631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사건(항소심 같은 법원 2009나6947호)의 판결에 의하여 판결금으로 327,814,478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.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위 판결금을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상 2016. 7. 25.자 매매의 거래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510,000,000원이 본래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조우연, 판사 정현서, 판사 권지은